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여기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218
----------	-------

발의연월일 : 2025. 11. 13.

발 의 자 : 여기구·박희승·조승래
박수현·김영호·한정애
박균택·조인철·문금주
서삼석·김준혁·권향엽
문대립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 인력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런데 농가 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로 농업인력 구조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미래 농업세대인 청년농업인의 비중도 지속적으로 줄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과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영농·어 의지는 있으나 사전준비가 필요한 청년 등을 예비후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하고 후계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운영경비 등 지원과 출연 또는 기부 근거를 마련하여 예비청년농업인 등을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과 혁신을 선도할 핵심 세대로 육성하려는 것임(안 제2

조 및 제12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예비후계농어업인”이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으나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실습 또는 창업 준비를 하는 자로서 나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1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를 “운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예비후계농어업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계농어업인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 ③ 개인·법인 및 단체는 후계농어업인 단체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u><신 설></u>	제2조(정의) ----- -----. 1. · 2. (현행과 같음) 3. “예비후계농어업인”이란 <u>농 어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았 으나 농업 또는 어업에 종사 하기 위하여 농업 또는 어업 관련 교육을 이수하거나 실습 또는 창업 준비를 하는 자로 서 나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u>
3. · 4. (생 략)	4. · 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u><신 설></u>	제12조(후계농어업인단체 지원) ① <u>예비후계농어업인은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후계 농어업인단체에 가입할 수 있 다.</u>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에서 후계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u>행정적</u> <u>· 재정적</u>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 ----- <u>운</u> <u>영비, 시설비와 그 밖에 필요한</u>

<u><신 설></u>	<u>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u> <u>③ 개인·법인 및 단체는 후계</u> <u>농어업인 단체 활동을 지원·</u> <u>육성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그</u> <u>밖의 재산을 출연하거나 기부</u> <u>할 수 있다.</u>
---------------------------	--